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능교육강사나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으로 추가하고,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4. 5. 29. ~ 7. 8.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 법 제10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

2.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

제86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를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7. (생략) ④·⑤ (생략)	제68조의2(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요건) 법 제105조제2호에서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 2.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연락처	(02) 3150 - 0659